



제3자를 통해 매도한 인쇄기 기술정보관련 비밀유지 의무 존재확인 등 청구사건

0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소화60년(와) 제4131호
판결 일자	1999. 12. 7.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원고	de La Rue Joliesse A(드 라 휘 줄리에스 아)		
피고	피고 국가(대표자 법무부장관)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지폐인쇄관의 제조 방법, 운용 방법 및 각 도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신의칙, 묵시의 계약		

02 사건 개요

원고 내지 원고의 전신에 해당하는 회사가 지폐인쇄기를 개발하며 이와 관련한 노하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국가인 피고에게 지폐인쇄기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회사를 통해 매각하였다.

그런데 지폐인쇄기의 제품의 설치 등은 매도인이 아니라 원고 측이 실제로 행하였고,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서는 수십 대의 지폐인쇄기 일괄 구입 이후 빈번한 기술교류를 하였다. 피고는 일괄 구입 시 혹은 이후에 적기의 납품이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자 국내의 회사로부터 지폐인쇄기를 매수 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계약명의자만 다를 뿐 피고가 본 건 인쇄기를 구입한 것은 원고 또는 그 전신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이고, 본건 인쇄기는 원고 측이 제조한 것이고, 피고가 지정하는 공장 내에 설치, 납품한 자도 원고 측이며, 인쇄기의 설치, 납품을 위한 협의 시에 원고 측 직원이 동석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여했으며, 본건 인쇄기계 수십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후, 피고와 원고 측 사이에는, 인적내지 기술적 교류가 이어졌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본 건 매매의 목적물이 은행권 등의 인쇄기계인 것, 구매자가 국가의 통화를 발행할 권한을 갖는 기관인 것, 위조방지의 관점에서 기술정보의 비밀을 보유하는 필요성이 강한 것 등의 특수성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당연히 피고가 구입한 인쇄기에 관한 비밀의 기술정보에 대해 수비(守秘)의무를 진다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

피고가 매매계약을 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제3의 회사이고, 본건 인쇄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정기술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해야하는 것을 계약명의자에게도 피고에게도 지시한 적도, 협상한 적도 없었다.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매도를 담당한 제3회사에 대해서도 비밀에 관한 지시 등을 한 적이 없고,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합의를 한 적도 없어 비밀관리의 요건이 결여 되어있어 신의칙에 의해 당연히 피고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인쇄기의 출시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논문에서도 발표되는 것을 보면, 경험상 기술정보는 진부화 및 기술상식화 되고 있다.

04 판결 요지

원고 측이 피고에게, 본건 인쇄기와 설명서 등을 넘겨줌에 따라, 본건 인쇄기에 포함된 어떠한 기술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추인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에 따라 당연히 비밀유지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매도인이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양도 등에 앞서, 포괄적 또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매수인에게 그 취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특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포함된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묵시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판매자 측에 비밀의 기술정보가 노하우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된 것을 엿보게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기술정보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보호되는 사정도 잘 엿보이지 않는다.

신의칙을 인정할 만한 특수성을 가지고는 당사자 관계라 할지라도, 본건 인쇄기에 포함된 기술정보는 비밀로서 유지관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의칙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05 Key Point

신의칙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인정은 최후의 보루이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 영업비밀보유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기술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당사자 모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